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822호, 2015.12.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업자의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매출액이 높은 영업자일수록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로 되어 있는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정종섭

◎ 대통령령 제2682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1조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을 “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등급 |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
|----|---------------------|---|
| 1 | 100 이하 | 12 |
| 2 | 100 초과 200 이하 | 14 |
| 3 | 200 초과 310 이하 | 17 |
| 4 | 310 초과 430 이하 | 20 |
| 5 | 430 초과 560 이하 | 27 |
| 6 | 560 초과 700 이하 | 34 |
| 7 | 700 초과 860 이하 | 42 |
| 8 | 860 초과 1,040 이하 | 51 |
| 9 | 1,040 초과 1,240 이하 | 62 |
| 10 | 1,240 초과 1,460 이하 | 73 |
| 11 | 1,460 초과 1,710 이하 | 86 |
| 12 | 1,710 초과 2,000 이하 | 94 |
| 13 | 2,000 초과 2,300 이하 | 100 |
| 14 | 2,300 초과 2,600 이하 | 106 |
| 15 | 2,600 초과 3,000 이하 | 112 |
| 16 | 3,000 초과 3,400 이하 | 118 |
| 17 | 3,400 초과 3,800 이하 | 124 |
| 18 | 3,800 초과 4,300 이하 | 140 |
| 19 | 4,300 초과 4,800 이하 | 157 |
| 20 | 4,800 초과 5,400 이하 | 176 |
| 21 | 5,400 초과 6,000 이하 | 197 |
| 22 | 6,000 초과 6,700 이하 | 219 |
| 23 | 6,700 초과 7,500 이하 | 245 |
| 24 | 7,500 초과 8,600 이하 | 278 |
| 25 | 8,600 초과 10,000 이하 | 321 |
| 26 | 10,000 초과 12,000 이하 | 380 |
| 27 | 12,000 초과 15,000 이하 | 466 |
| 28 | 15,000 초과 20,000 이하 | 604 |
| 29 | 20,000 초과 25,000 이하 | 777 |
| 30 | 25,000 초과 30,000 이하 | 949 |
| 31 | 30,000 초과 35,000 이하 | 1,122 |
| 32 | 35,000 초과 40,000 이하 | 1,295 |
| 33 | 40,000 초과 | 1,381 |

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
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정지
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등급 |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
|----|---------------------|---|
| 1 | 20 이하 | 5 |
| 2 | 20 초과 30 이하 | 8 |
| 3 | 30 초과 50 이하 | 10 |
| 4 | 50 초과 100 이하 | 13 |
| 5 | 100 초과 150 이하 | 16 |
| 6 | 150 초과 210 이하 | 23 |
| 7 | 210 초과 270 이하 | 31 |
| 8 | 270 초과 330 이하 | 39 |
| 9 | 330 초과 400 이하 | 47 |
| 10 | 400 초과 470 이하 | 56 |
| 11 | 470 초과 550 이하 | 66 |
| 12 | 550 초과 650 이하 | 78 |
| 13 | 650 초과 750 이하 | 88 |
| 14 | 750 초과 850 이하 | 94 |
| 15 | 850 초과 1,000 이하 | 100 |
| 16 | 1,000 초과 1,200 이하 | 106 |
| 17 | 1,200 초과 1,500 이하 | 112 |
| 18 | 1,500 초과 2,000 이하 | 118 |
| 19 | 2,000 초과 2,500 이하 | 124 |
| 20 | 2,500 초과 3,000 이하 | 130 |
| 21 | 3,000 초과 4,000 이하 | 136 |
| 22 | 4,000 초과 5,000 이하 | 165 |
| 23 | 5,000 초과 6,500 이하 | 211 |
| 24 | 6,500 초과 8,000 이하 | 266 |
| 25 | 8,000 초과 10,000 이하 | 330 |
| 26 | 10,000 초과 | 367 |

다. 품목류·품목 제조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등급 |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 품목류·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의 금액(단위: 만원) |
|----|---------------------|---|
| 1 | 100 이하 | 12 |
| 2 | 100 초과 200 이하 | 14 |
| 3 | 200 초과 300 이하 | 16 |
| 4 | 300 초과 400 이하 | 19 |
| 5 | 400 초과 500 이하 | 24 |
| 6 | 500 초과 650 이하 | 31 |
| 7 | 650 초과 800 이하 | 39 |
| 8 | 800 초과 950 이하 | 47 |
| 9 | 950 초과 1,100 이하 | 55 |
| 10 | 1,100 초과 1,300 이하 | 65 |
| 11 | 1,300 초과 1,500 이하 | 76 |
| 12 | 1,500 초과 1,700 이하 | 86 |
| 13 | 1,700 초과 2,000 이하 | 100 |
| 14 | 2,000 초과 2,300 이하 | 106 |
| 15 | 2,300 초과 2,700 이하 | 112 |
| 16 | 2,700 초과 3,100 이하 | 118 |
| 17 | 3,100 초과 3,600 이하 | 124 |
| 18 | 3,600 초과 4,100 이하 | 142 |
| 19 | 4,100 초과 4,700 이하 | 163 |
| 20 | 4,700 초과 5,300 이하 | 185 |
| 21 | 5,300 초과 6,000 이하 | 209 |
| 22 | 6,000 초과 6,700 이하 | 235 |
| 23 | 6,700 초과 7,400 이하 | 261 |
| 24 | 7,400 초과 8,200 이하 | 289 |
| 25 | 8,200 초과 9,000 이하 | 318 |
| 26 | 9,000 초과 10,000 이하 | 351 |
| 27 | 10,000 초과 11,000 이하 | 388 |
| 28 | 11,000 초과 12,000 이하 | 425 |
| 29 | 12,000 초과 13,000 이하 | 462 |
| 30 | 13,000 초과 15,000 이하 | 518 |
| 31 | 15,000 초과 17,000 이하 | 592 |
| 32 | 17,000 초과 20,000 이하 | 684 |
| 33 | 20,000 초과 | 74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